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97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이성윤 · 한병도 · 강경숙
차지호 · 윤준병 · 김의겸
朴芝源 · 이춘석 · 박희승
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한국 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에 벤처투자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음.

이에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사무소의 소재지

- ⑥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u>	3. <u>분사무소의 소재지</u>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u>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